

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」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 
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**

**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9313호, 2023.3.28. 공포, 2023.9.29. 시행)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성명, 임대주택의 소재지 등을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으로 지정·고시하려는 것임

**2. 의견제출**

「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 제정안」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민간임대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 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| 개 정 안 | 수 정 안 | 의 건 |
|-------|-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|     |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
민간임대정책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4105, 4477 FAX : 044)201-5650